

1. uTradeHub 이용안내

1

내국신용장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한데 전자화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구매업체는 온라인을 통한 내국신용장신청으로 업무효율성 및 정보활용 제고, 공급업체에 대한 자동전달, 국세청에 대한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폐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내국신용장 수령 간소화는 물론 은행 매입환가료 및 취급수수료 최대 50% 절감, 서류우 편료 폐지, 국세청에 대한 내국신용장 사본 제출이 폐지로 훨씬 편리하고 저렴하게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uTradeHub를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입약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

- 기존 uTradeHub 구매확인서 이용 고객이 내국신용장을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구매확인서 이외에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겠다고 uTradeHub 회원정보 변경란에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은행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과 별도의 약정체결이 필요하며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은 일반요금제와 건별요금제중 하나의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uTradeHub 회원가입 절차와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 uTradeHub 이용을 위해서는 KTNET 회원가입과 거래은행 약정체결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KTNET은 직접 방문없이 온라인과 fax로 즉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은행과의 전자무역 EDI 약정체결은 별도의 서류 절차가 필요하여 은행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4

1년에 1~2건의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는 업체입니다. 기본료를 내지 않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통지, 매입·추심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매입시 해당 건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별요금제를 선택하면, 기본료 없이 건당 3,0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건별요금제 선택은 uTradeHub 가입이용 고객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존 자사 ERP 연계를 통한 EDI 이용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구매확인서는 일반요금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내국신용장은 건별요금제로 선택할수 있나요 ?

- uTradeHub 로컬거래(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이용요금은 전체가 하나의 요금제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로컬거래에 대해 일반요금제 또는 건별요금제중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며, 일반요금제와 건별요금제를 혼용하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6

내국신용장 전자개설이 2012년 2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한다고 하는데, 유예기간은 없나요 ?

- 한국은행 무역금융 시행세칙이 2012년 2월 25일 개정 공표되어 2013년 2월1일 전면 전자화 시행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된 만큼 별도의 추

가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으며, 2013년 2월부터는 은행방문에 의한 종이 개설은 불가합니다.

7

uTradeHub에서 내국신용장업무를 가입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요?

- 현재 KTNET 회원 가입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가입과 공인인증서 없이 ID/PW 방식의 회원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8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통지가 쉽지 않습니다. 영세업체를 위한 별도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요?

- 내국신용장의 경우 구매확인서와는 달리 영세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외국환은행의 신용보증서인 만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환은행에서 개설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는 거래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KTNET 고객지원센터 (1566-2119)에 문의하시면 PC원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uTradeHub 이용요금 청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은행 수수료는 무역업체와 은행이 직접 정산하며, KTNET서비스 요금은 KTNET이 월 1회 지로로 사후청구(서비스이용 익월 15일)합니다.

10

uTradeHub가 아닌 거래은행 온라인사이트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 하는 경우 이용 수수료가 없는데 해당은행 시스템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등)에 의하면 전자내국신용장은 반드시 KTNET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 2월 1일부터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정보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경유하지 않는 전자 내국신용장은 부가세 영세율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 만약 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중계시스템을 경유한다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은행시스템이 중계시스템을 경유하면 전송료가 발생하므로 결국 무역업체가 전송료를 납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업체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관계없으나 이용하는 외부시스템이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계시스템을 경유하는지, 또한 자사(自社)의 내국신용장 개설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객혼란 방지를 위해 향후 은행사이트를 통한 신청시 서비스 이용방식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자체시스템을 통해서도 내국신용장 업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자체시스템 구축에는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 uTradeHub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업 자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내부 ERP와 KNET을 연계하여 은행과 전자문서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시스템의 구축비용은 시스템의 구축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산출은 기업의 여러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uTradeHub의 내국신용장 메뉴의 “공급자” 란 입력시 어느 공급자이든 모두 검색이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개설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미리 등록해두어야 하며, 해당 공급업체 리스트중에서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시는 방법은 uTradehub의 내국신용장통합서비스 동영상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uTradeHub의 회원가입 및 내국신용장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자료가 별도로 제공 되는지요 ?

- uTradeHub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내국신용장 신규 이용고객을 위한 uTradeHub 가입절차, 내국신용장 상세 이용방법에 관한 메뉴얼 및 안내 동영상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내국신용장 개설

1

내국신용장 전자개설시에도 Tolerance(허용오차) 기재가 가능한가요?

- 통상적으로 실적한도 기준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Tolerance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조건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서류에 Tolerance 조항이 있는 있으면 내국신용장 개설시에도 Tolerance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은행별로 Tolerance 허용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설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개설신청시 Tolerance 기재방법은 개설신청서상의 <기타> 란에 허용오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근거서류 기준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1개의 근거서류로 여러 장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근거서류로 1장의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한지요 ?

- 구매업체의 사정에 따라 근거서류 1부를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여러 번 나누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설된 여러 장의 내국신용장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반면, 여러 장의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1장의 내국신용장으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종이개설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서류는 1개만 선택하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내국신용장 개설시에 물품 매도(공급)확약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

- 실적기준 내국신용장 개설시에는 물품매도확약서 첨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기준인 경우에는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매업체는 uTradeHub를 통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를 전자적으로 전달받은 후 개설 신청시 이를 전자적으로 은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업체는 팩스, 또는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를 전달받은 후 은행에 팩스, 스캔문서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KTNET에서 내국신용장 개설도 되나요?

- 한국은행 무역금융 시행세칙에 의해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에서만 개설되도록 되어 있으며, KTNET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서 전자문서의 중계·보관·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내국신용장 개설을 신청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uTradeHub에서 개설신청은 매일 24시간 제한없이 가능하나, 은행의 개설 승인은 통상 은행 업무시간 중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영업시간 이외에 신청한 경우에는 익일 은행영업일에 개설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는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별표 2(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서류제출이 면제되며, 내부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본 서류의 은행 제출이 필요합니다.

7

내국신용장 이용시 “선적 후 사후개설”, “개설당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화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수용 가능한가요 ?

- 내국신용장의 경우 물품 구매(공급) 이전에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필요에 따라 선적 후 사후발급, 개설당일 매입 등의 관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전자화의 취지가 국내 로컬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인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물품 공급 이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셔야 하며, 물품수량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8

전자화 의무시행 이전 개설된 종이내국신용장에 대하여 제도시행 이후 조건변경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전자적으로 다시 개설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자화 의무시행 이전 개설된 종이내국신용장의 경우 조건변경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존방식대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다만, 제

도시행이후에는 종이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9

내국신용장 개설이후 구매업체의 요청으로 구매(공급)액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기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대한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조건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매(공급)액, 수혜자(공급업체)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구매업체, 공급업체간의 동의서를 은행에 오프라인(서면,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내국신용장 통지

1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공급업체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나요?

- 이전에는 구매업체가 직접 공급업체에 인편,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으나 2013년 2월부터는 uTradeHub내에서 공급업체가 자사 앞으로 개설된 내국신용장 통지내역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시 반드시 수익자(공급업체)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공급업체가 자사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KTNET(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통지받은 내국신용장을 공급업체로 종이로 출력하여 전달할때, 적색고무인을 날인하는데 향후에도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별표2 (서류제출 특례) 제7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여백에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원본임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업무가 전면 전자화 시행되면 해당정보가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만큼, 2013년 2월 1일부터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관세청 등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계속해서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표 4] 적색고무인 규격(제12조제3항 관련)

12 cm	
본 문서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의거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이며, 위조·변조시 동법률 제30조에 의한 책임을 준수할 것을 확인함.	4cm
20 제출자 ○ ○ ○ (인)	

3 공급업체를 위한 내국신용장 무료 통지 서비스제공은 2014년 1월 말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 네. 해당 서비스는 2014년 2월 매입 의무화 시행전까지 공급업체를 위하여 무료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의 유료 전환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여 드리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전자내국신용장 추심/매입

1

당초 일반물품으로 구매(공급)하였으나 추후 수출용 물품으로 사용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 당초 일반용으로 재화를 구매(공급)하였으나, 추후 수출용 물품으로 용도가 바뀐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까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수정 세금계산서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며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구분	수정 발급일	작성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수정신고 유무	발급기한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내국 신용장 개설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개설된 경우에는 20일까지 발급)

※ 부가세 과세기간 : 1기 (1/1~6/30일), 2기 (7/1~12/31)

2

매입신청은 2014년 2월부터 온라인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전자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까?

- 매입신청(판매대금추심(매입)의뢰서)는 현재 이미 전자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바로 업무적용이 가능합니다.

3

내국신용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 업무도 전자적으로 처리 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 및 통지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인수증, 매입(추심)의뢰 등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공급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이전에, 구매자가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물품수령증명서 상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처리 방법이 있나요 ?

- 은행의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을 위해 구매자는 물품수령증명서상에, 공급자는 매입신청서 상에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24자리)를 입력토록 하였습니다.
- 다만, 여러 사유로 구매자와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매입은행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도시행후 1년간 사용자간 피드백을 통하여 동 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 사후관리

1

내국신용장 전자화시 국세청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내국신용장 전자화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내국신용장 종이사본 제출은 폐지되며, 간단한 발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③항)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따른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⑬)

2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그 자료가 바로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나요?

-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국신용장 발급내역은 월 1회, 매달 25일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3

국세청은 내국신용장과 영세율 신고서류를 어떻게 대조하나요 ?

- KTNET이 국세청에 제출한 개설정보와 공급업체가 부가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발급명세서상에 기재한 발급번호를 상호 대조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